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25
----------	-------

발의연월일 : 2021. 10. 12.

발 의 자 : 임이자 · 곽상도 · 권명호
권성동 · 김희국 · 박대수
박덕흠 · 성일종 · 이종성
정찬민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자동차제조사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발송하는 결함 통지문을 보면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제작결함 사실만을 통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결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수기 제주도 등 관광지에서 차량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어 일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대체 차량 제공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동차 결함 공개로 인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 중인 차량

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자동차 제조사의 시정조치 기간 미확정 안내로 인해 차량의 임차인이 시정조치에 혼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공개 후부터 신규대여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시정조치 기간을 확정한 후부터 신규대여를 제한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수급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비자 분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3항 중 “경우”를 “후 시정조치 기간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개된 자동차가 공개 당시 이미 대여”를 “공개되고 시정조치 기간 전 자동차가 이미 대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② (생략)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u>경우</u>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신규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 ----- ----- ----- <u>후</u> <u>시정</u> <u>조치</u> <u>기간부터</u> ----- ----- -----.
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이 <u>공개된</u> <u>자동차가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의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조치를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u>	④ ----- ----- ----- <u>공개되고</u> <u>시정조치</u> <u>기간 전</u> <u>자동차가 이</u> <u>미 대여</u> ----- ----- -----. ----- -----.